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식품사막지역 거주 주민들의 영양 개선 등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541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368호)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43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식품사막지역 거주 주민들의 영양 개선 등 (소병훈의원안, 복기왕의원안)	4
2. 감염병 관련 영양사 결격 사유 완화 (서영석의원안)	17

I. 개 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5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25.
- (3) 회 부 일 : 2025. 11.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식품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됨.

이에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항,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3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12. 18.
- (3) 회 부 일 : 2025.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중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3.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643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1. 30.
- (3) 회 부 일 : 2025. 2.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식품사막지역 거주 주민들의 영양 개선 등 (소병훈의원안, 복기왕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각각 식품사막지역을 정의하고(안 제2조제4호 신설),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식품사막지역에 식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소병훈의원안 제3조제4항 신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식품(등) 구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안 제7조), 식품사막지역의 식품(등) 구입 환경 및 공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국가 및 지자체가 식품사막지역에 식품 판매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복기왕의원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소병훈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식품사막지역”</u> <u>이란 구역 내에</u> <u>식품을 판매하는</u> <u>상점 또는 시장이</u>	제2조(정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식품사막지역”</u> <u>이란 구역 내에</u> <u>식품 및 건강기능</u> <u>식품(이하 “식품</u>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도 식품 구입이 곤란하여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도 식품등 구입이 힘들어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막 지역에 식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u>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7조(국민영양관리기 본계획) ① (생 략)	제7조(국민영양관리기 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제7조(국민영양관리기 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② ----- ----- -----.
1. 2. (생 력)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제11조의2에 따른 식품사막지 역 식품등 구입 환경 개선사업 추 진계획</u>
3. 4. (생 력)	3. 4.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식품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 식품구입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u>	
5. (생 력)	6. (현행 제5호와 같음)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1조의2(식품사막 지역 식품등 구입 환경 개선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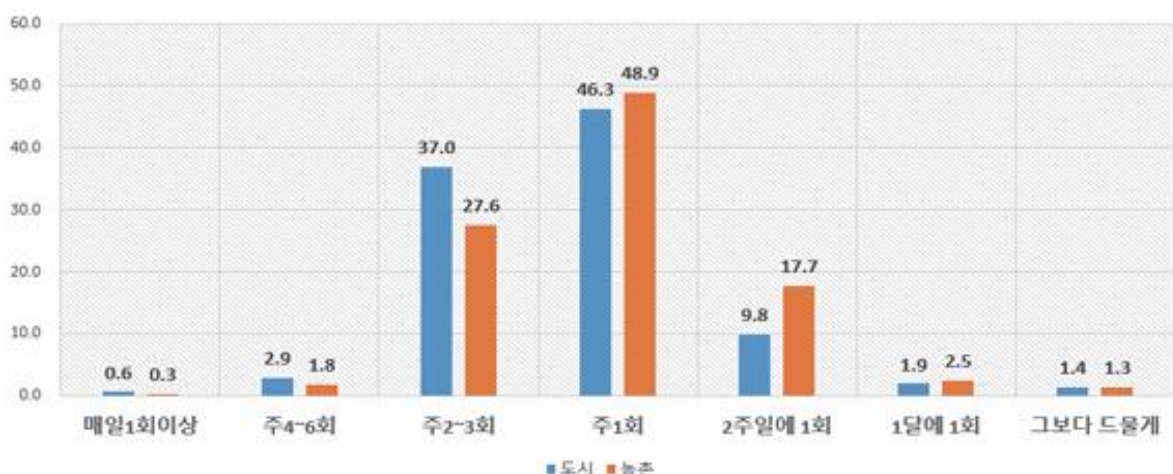
제13조(영양관리를 위	제13조(영양관리를 위	<u>단체는 식품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등 구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 판매시설 설치</u> <u>2.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u> <u>3.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의 배달서비스 실시</u> <u>4. 식품사막지역에 식품등의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u> <u>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13조(영양관리를 위
--------------	--------------	---

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 ④ (생략)	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식품사막지역의 식품구입 환경 및 식품공급에 관한 조사</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식품사막지역의 식품등 구입 환경 및 공급에 관한 조사</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나. 주요 검토 사항

-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처음 쓰인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과 같이 농촌 등과 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신선식품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함¹⁾.
 - 미국 농림부는 ‘식품사막’을 ‘거주지 기준 1마일(단, 농촌지역의 경우는 10마일) 반경 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는 곳’으로 설정하였고, 일본은 ‘거주지 500m 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의 노인’을 ‘장보기 약자’로 정의함²⁾.
- 우리나라도 농촌 등 지역에서 식품구매·접근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를 보면 도시 지역이 가구 내 식품 구입 주기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주기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 등 지역에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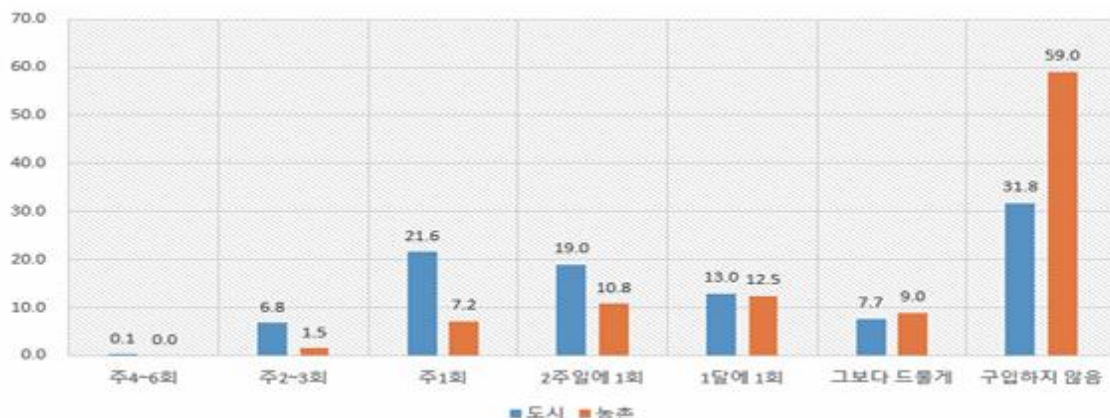
< 도농별 식료품 구입 주기 비교 >



1) 장영주,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383호, 2025. 12. 26.

2) 조원지, 「농촌지역 ‘식품사막화(Food Desert)’의 의미와 과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 307

< 도농별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주기 >



□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가구원 모두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가구의 비율(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을 보면, 읍·면 지역에서 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건강통계’에서 도농 간에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격차도 다소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

< 식품안전성 확보 가구분율 추이³⁾ >

(단위: %)

연도	전체	거주지역별		소득수준별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4	93.8	93.8	94.0	84.9	93.4	97.6	99.6	99.5
2015	93.5	93.4	93.8	84.4	94.3	95.0	98.8	99.7
2016	95.8	95.9	95.2	89.2	96.1	97.9	99.7	99.5
2017	96.3	96.5	94.9	88.2	94.9	98.4	99.8	99.5
2018	96.9	97.1	96.0	88.5	97.7	98.6	99.5	99.9
2019	96.5	96.8	95.1	87.0	95.8	99.4	99.6	100.0
2020	96.3	96.5	95.3	86.6	96.1	98.3	99.8	99.8
2021	96.7	97.0	95.3	89.6	96.1	98.4	99.1	99.5
2022	98.5	98.9	96.8	94.1	99.0	99.3	99.8	99.9
2023	98.3	98.6	96.9	94.3	98.0	99.0	99.8	100.0

주 1)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가구원 중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1명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행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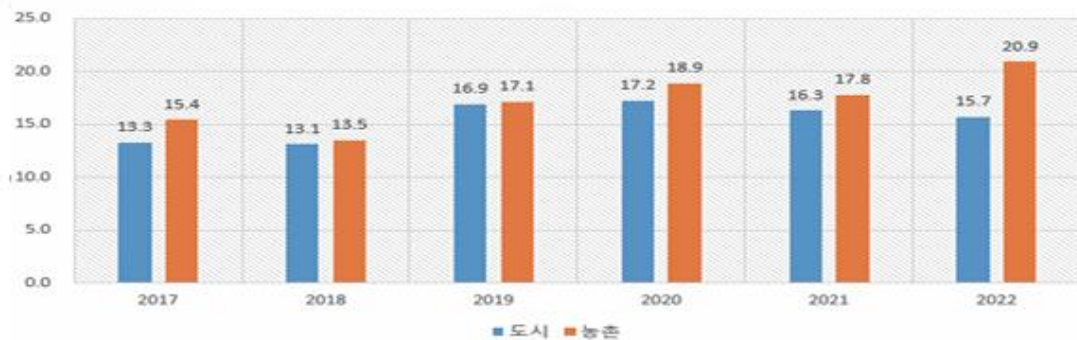
주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5분위로 분류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42&conn_path=I3)(2025.12.2. 검색)

3) 장영주, 앞의 글, p.4.

< 도농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



출처: 각 연도별 「국민건강통계」

□ 이러한 식품사막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바, 낮은 소득수준과 농업 의존 경제가 식품 구매력에 영향을 끼치고, 지역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 접근성이 제한되고,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화, 대형 유통망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⁴⁾.

□ 이에 따라 이러한 식품 접근성 문제는 농식품·복지·교통·지역개발 등이 결합된 영역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현재 관련 정책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지원 및 먹거리 보장 정책과 일부 이동장터 운영사업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복지형 바우처,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⁵⁾.

-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식품 사막으로 정의하

4) 조원지, 앞의 글, p.6

5) 장영주, 앞의 글, p.8

고, 관련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소병훈의원안은 “식품사막지역”을 “구역 내에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도 식품 구입이 곤란하여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3조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사막지역에 식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식품구입 환경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사막지역의 식품구입 환경 및 식품공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복기왕의원안은 소병훈의원안과 달리 식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상점 등이 없거나 구입이 힘든 지역을 “식품사막지역”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대신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식품사막지역 상품등 구입 환경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구 분	소병훈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식품사막화지역 (안 제2조제4호 신설)	구역 내에 <u>식품</u> 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역 내에 <u>식품 및 건강기능식품</u> (<u>이하 “식품등”이라 한다</u>)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시장이 없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구 분	소병훈의원안	복기왕의원안
	도 식품 구입이 곤란하여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도 식품등 구입이 힘들어 지역주민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안 제3조제4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막지역에 식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안 제7조제2항)	식품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제11조의2에 따른 식품사막지역 식품등 구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구입환경 개선사업 (안 제11조의2 신설)	-	-식품등 판매시설 설치 -식품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 -식품등의 배달서비스 실시 -식품등의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식품구입 환경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식품등 구입 환경 및 공급에 관한 조사

□ 이와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개선사업 시행, 계획 및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전 국민의 영양 수준을 고르게, 충분히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개정안 제7조는 식품사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는 임산부·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포함하고 있으나 식품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전략 및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4대 추진 전략 >

1	국민의 식생활 변화 인식 제고 추진
2	건강한 식생활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
3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 서비스 강화
4	영양관리 기반 내실화를 위한 근거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사막 문제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소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도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 내용과 관련된 타 법률 규정 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⑥ (생략)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이하 생략)

제6조(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시·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생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내용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대한영양사협회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 구매 어려움 및 영양섭취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감염병 관련 영양사 결격 사유 완화 (서영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한정하고, 감염병에 걸린 영양사의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의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3호에 따른 <u>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 3. 4. (생략)	제16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45조제1항에 따른 <u>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u> 3. 4. (현행과 같음)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 ----- ----- -----. ----- -----.

1. <u>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u> <u>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 2. 3.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u>정지</u>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1. <u>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u>----- ----- -- 2. 3. (현행과 같음) ② ----- ----- ----- ----- <u>정지(다만, 제3호</u> <u>의 경우는 감염력이 소멸되는</u> <u>기간으로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3. <u>제16조제2호에</u> <u>해당하게 된</u> <u>경우</u>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에서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제21조제1항제1호6),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6조제4호).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찻가무시증

카. 램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쳐. 치쿤구니아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 8. 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침균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크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영양사는 감염병 위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6)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살펴 보면, ‘영양사’와 같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의 경우만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결격사유 >

직종	근거법	결격사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법」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약사, 한약사	「약사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응급구조사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위생사	「공중위생 관리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보건교육사	「국민건강 증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영양사*	「국민영양 관리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3호에 따른 <u>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리사	「식품위생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이는 다수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조리에 관여하는 직종에서 특히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그러나, 대상 감염병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와도 연계되어 1년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다른 보건의료직종에 비하여 다소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영양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고 있는 감염병환자⁷⁾의 경우’로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감염력이 소멸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업무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영양사의 업무를 보다 연속성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u>보건복지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②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위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 다만, 최근 3년간 감염병 관련 사유로 영양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없고, 결격사유 등을 개정안과 같이 완화할 경우, 다수가 섭취하는 급식소 등에서 영양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안 부칙 제2조는 영양사 결격사유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이 법률 시행 당시 개정 전 제16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영양사에 대해서도 제16조제1항⁸⁾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에 두는 특례는 신법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신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신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례를 두어야 하므로 조제목을 “영양사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로, 개정안 부칙 제2조 중 “제16조제1항”은 오기이므로 이를 “제16조”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이는 주로 수인성 전염병인 것으로 파악됨.

8) 제16조에는 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오기(誤記)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감염병 환자를 광범위하게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면허의 발급과 유지를 제한하는 대상과 효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질병관리청은 개정안과 같이 처분의 대상을 수인성 감염병 환자에 한정하고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면허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임. 그 외, 대한영양사협회는 현행 감염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1